

『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8일

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박 성 애

나. 제안이유

-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함(안 제5조)
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정함(안 제8조~제9조)
-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정함(안 제10조~제11조)
-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비용의 지원을 정함(안 제12조~제13조)
- 지도·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4조~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7조, 제11조, 제19조, 제20조,
「건강가정 기본법」 제34조, 제3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』은

-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만 3개월 ~ 만 7세 이하 아동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및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 등 앞으로 아이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, 아이돌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- 「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」에 의거,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20% ~ 100%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, 지원 비용은 연간 약 3억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운영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은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